

장애인 체육회
인사위원회 운영규정

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4. 01. 16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6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며,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서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규정 제20조에 규정된 직원에 적용된다.

제4조(조직)

-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.
- ④ 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총무팀장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
2.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4.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5.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6.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
7. 기타 인사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운영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4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주인을 받아야 한다.
5. 본 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, 총무팀장을 위원으로 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6. 소위원회에서는 6급 이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은 본 위원회에 준한다.

제7조(진술권 부여) 본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또한,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)

-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② 본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.
- 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인사사항은 이사회의 재심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9조(인사위원회 회의록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, 날인 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
2. 출석위원의 서명
3. 심의안건과 내용
4. 의사
5. 기타 중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4. 01. 16.)